

시립아하!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21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5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,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

나.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※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” 개정(’16. 1. 7.)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시립아하!청소년성문화센터
- 소재지 :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00
- 시설규모 : 668㎡(3층/지하1층)
- 이용대상 : 각급 학교 학생, 시설 청소년, 학부모, 지도자 등
- 주요사업 :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, 성문화 교육관 운영, 청소년 성교육 지도자 양성 등

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6. 9.29.~2019. 9.28.)
- 위탁업무
 -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 - 아동·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
 - 발달 단계별 성문화 교육관 설치·운영
 - 출장 성교육, 거리상담활동, 학부모 성교육
 -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, 성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등
- 소요예산 : 665,548천원(국비 75,370천원, 시비 590,178천원)
- 선정방법 : 공개경쟁입찰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의 위탁 등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성교육 전문기관으로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 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<개정2014. 5.14.>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4. 5.14.>
 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(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 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(이하 "성교육 전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의 위탁 등)
 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(이하 "성교육 전문기관"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설치·운영하는 단체
 - 2.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·운영하는 단체

3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,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
4.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

나. 예산조치 : 2016년도 예산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청소년담당관 청소년상담팀 선지현 (☎2133-4130)